



II. 일 본

1. 진입장벽 특징 • 121
2. 주요 진입장벽 • 121
3. 진입장벽 피해사례 • 141
4.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 144

II

1. 진입장벽 특징

일본은 타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며 비관세조치의 영향도 미국이나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타국에 비해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의 하나임. 반면에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

일본의 구조적인 무역장벽으로 기업관행을 들 수 있는데 수출업체가 거래에 애로가 되는 일본 기업문화의 특징은 상호간의 인간적인 유대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안정적 관계가 중시되며 계약서보다 교섭과정이 중시되고 또한 의사결정이 자주 지연되고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엄격한 거래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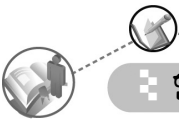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2. 주요 진입장벽

가. 수입정책 관련

1) 수산물 수입할당제 시행

현재, 일본의 수입할당 품목(IQ) 수산물에는 다음과 같이 19품목이 있으며 쿼터를 가진 자만 수입할 수 있다.

- ① 태평양종 청어
- ② 김
- ③ 무당의 조미 김
- ④ 김의 조제품(무당의 조미 김 제외)
- ⑤ 오징어



- ⑥ 명란
- ⑦ 건조 오징어
- ⑧ 다시마 조제품
- ⑨ 고등어
- ⑩ 정어리
- ⑪ 청어(태평양종 제외)
- ⑫ 식용해초(파래, 녹조류 속)
- ⑬ 전갱이
- ⑭ 다시마
- ⑮ 한국산 수산물(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가리비, 방어, 대구, 쫄면, 패주, 건멸치),
- ⑯ 대구
- ⑰ 명태
- ⑱ 가리비
- ⑲ 방어, 쫄면, 패주 및 건 멸치

2)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할당

가) 현황

일본정부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서 1966년부터 9종 어패류(대구,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건멸치, 쫄면, 가리비, 패주) 등에 대한 수입할당과 한국산을 제외할 세계 102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할당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수입할당제(Import Quota, IQ)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쿼타 할당내역

—한국 : (1982)4,500만불→ (1983)4,000→ (1998)4,000→ (2007)4,500만불

나) 문제점

—기타 102개국 산에 대해서는 방어, 쫄면, 패주, 건멸치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제를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수량할당제로 전환하여 수입어종의 단가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도 1982년과 같은 수준인 4,500만 달러로 정채되어 있음



다) 일본측 입장

- 국내 어업보호를 위해 수입할당제를 폐지할 수 없음
- 특히 한국산에 대해서는 이들 수산물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해역에서 채취되므로 적절한 관리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한국을 102개 국과는 별도 쿼터로 유지해야 함

3) 품목별 수입할당 현황

■ 다시마 조제품

가)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77년부터 다시마조제품에 대해 한국에 대해 서만 수입할당제를 실시해 오고 있음.
- 매년 쿼터량은 500톤이었으나 2007년 12월 19일 발표에는 600톤으로 설정됨

나) 일본측 입장

- 국내 생산자(주로 북해도) 보호를 위해 수입할당제 유지가 불가피함

■ 명태

가) 현황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66년부터 명태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08년 4월 23일 발표한 쿼터량은 1,027천톤

나) 문제점

- 수입할당량은 90년 이후 1,027천 톤으로 쿼터량이 늘지 않고 있음.
- 특히 명태에 대해서는 다른 수산물에는 없는 해외수산개발할당량(70만톤, 쿼터량의 68%)을 도입하여 (재)해외어업협력재단이 독점적으로 수입인증을 발급하게 하고 있음

다) 일본측 입장

- 국내 어업보호를 위해 수입할당제 유지가 불가피

■ 청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66년부터 청어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해 오고 있음.



-대서양산에 대해서는 65,000톤(2007년 9월 5일 발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한국산이 속한 태평양산에 대해서는 92,000톤(2008년 3월 21일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어 세계 전체적으로는 157,000톤의 쿼터량을 배정

나) 일본 측 입장

-국내 어업보호를 위해 청어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가 불가피

■ 명란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66년부터 명란(대구알 포함)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7년 10월 31일 발표에서는 쿼터량이 98,326톤으로 나타남

나) 일본측 입장

-국내 어업보호를 위해 명란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가 불가피

■ 오징어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77년부터 오징어(갑오징어 제외)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해 오고 있음.

-활·선·냉동·냉장·염장 오징어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21일 발표에서 74,95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며 건조오징어는 2007년 10월 31일 발표에서 4,50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음

나) 일본 측 입장

-국내 어업보호를 위해 오징어에 대한 수입할당제 유지가 불가피함

■ 다시마

가) 현황

-일본은 자국어업 보호를 이유로 1977년부터 다시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해 오고 있음.

-다시마에 대해서는 세계 전체에 대해 2008년 7월 25일 발표에서 2,960톤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음



나) 문제점

- 전세계를 대상으로 쿼터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한국, 대만을 겨냥한 쿼터임

다) 일본측 입장

- 국내 다시마 생산자(주로 북해도) 보호를 위해 수입할당제 유지가 불가피함

■ 고등어

○ 세계 전체에 대해 2007년 10월 4일 발표에서 227,000톤의 쿼터배정

■ 정어리

○ 세계 전체에 대해 2007년 9월 5일 발표에서 50,800톤의 쿼터배정

■ 식용해초(파래, 녹조류 속)

○ 세계 전체에 대해 2008년 7월 25일 발표에서 130톤의 쿼터배정

■ 전갱이

○ 세계 전체에 대해 2007년 9월 5일 발표에서 125,000톤의 쿼터배정

■ 대구

○ 세계 전체에 대해 2008년 4월 23일 발표에서 72,700톤의 쿼터배정

■ 가리비

○ 세계 전체에 대해 2008년 5월 7일 발표에서 5,720톤의 쿼터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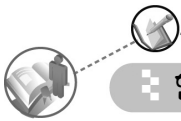
■ 방어, 콩치, 패주 및 건멸치

○ 세계 전체에 대해 2008년 5월 7일 발표에서 2,640만불의 쿼터배정

4) 김(海苔)에 대한 수입할당(IQ)제 시행

가) 현황

- 일본은 1959년부터 김을 수입할당 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매년 250만 속을 할당해 왔음



- 1978~1994년까지는 일본자체의 생산량 증대 및 수입창구 단일화로 대일 수출이 중단됨
- 1995년부터 양국 수산청장간 합의로 대 한국 수입을 재개하여 경제산업성이 공고한 할당량 내에서 양국 민간단체(한국 : 수산물 수출입조합, 일본 : 김협회)가 합의한 물량을 과거 수입실적이 있는 상사에 할당하기 시작(상사할당)
- 1999년부터 수요자할당과 선착순할당을 신설
 - 상사할당 : 경제산업성에서 과거의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할당하며 김 수입조합을 통하지 않고 상사가 직접수입(건조김과 조미김 구분이 없음)
 - 수요자할당 : 김을 수요하는 생산자단체에 배정
 - 선착순할당 : 수산청장관으로부터 발주한도 내시서(內示書)의 발급을 받은 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자
- 2006년 1월 한·일 정부간 김 수입할당(IQ)제도 관련 협의결과 일본은 한국 측 수입할당 범위를 향후 10년 후에 10억 매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한국 측은 WTO 패널제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한국 측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쿼터량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는 896만 속으로 결정됨(한국에 부여된 쿼터량은 536만 속)

○ 연도별 할당내역 추이

(만속)

' 95	' 96	' 97	' 98	'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	33	40	58	69	120	150	180	210	240	400	570.15 한국340	741 한국441	896 한국536

주) 1속=100매

○ 최근할당내역

원산지	상품	할당	'08년도 물량 (천 매)	'07년도 물량 (천 매)	
한국	건조김	상사할당 A1	70,000	34,000	
		상사할당 A3	0	36,000	
		수요자할당	122,000	122,000	
		합계	192,000	192,000	
	무당 조미김 (한국풍 조미김)	상사할당 A1	121,000	44,000	
		상사할당 A3	0	61,000	
		수요자할당	164,000	139,000	
		선착순할당	5,000	5,000	
	합계	290,000	249,000		
	김의 조제품 (구운김, 조미김)	상사할당 A1	22,000	0	
		수요자할당	32,000	0	
		합계	54,000	0	
	한국 원산 김 합계			536,000	441,000
	중국	건조김	상사할당 A2	83,000	60,000
			수요자할당	197,000	160,000
합계			280,000	220,000	
김의 조제품 (구운김, 조미김)		상사할당 A2	50,000	50,000	
		수요자할당	20,000	20,000	
		합계	70,000	70,000	
중국 원산 김 합계			350,000	290,000	
한국중국선택가능	건조김	선착순할당	5,000	5,000	
	김의 조제품 (구운김, 조미김)	선착순할당	5,000	5,000	
총 합 계			896,000	741,000	

자료) 전어련(전국김어업협동조합연합회)

- 주) 1. 상사할당 A1 : 전년도 한국으로부터 한국원산 김을 수입 통관한 실적을 가진 자
 2. 상사할당 A2 : 중국으로부터 중국원산 김을 수입 통관한 실적을 가진 자
 3. 선착순할당 : 100만매를 일반 사업자에 대해 할당, 응모자격으로 전년도 10만 달러 이상의 식품 수입실적이 필요
 4. 수요자할당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김협회)가 소지하고 있는 수입범위, 일본국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입찰회, 상담회를 한국, 중국에서 개최



나) 문제점

- 우리나라가 독점 수출해 왔던 김이 2005년부터 중국에도 쿼터가 배정됨
- 일본 김 시장규모(연 11,000만속)에 비해 한국산 김 쿼터량은 536만 속으로 2008년도를 기준으로 4.8%에 불과하여 대일 수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이로 인해 기존거래업체의 주문량을 소화하기 힘든 것은 물론 신규 거래 희망 업체와는 거래가 불가능한 실정
- 특히 상사할당량 부족으로 대일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미김 25%, 건조김 1.5円/매(약 20%에 해당) 등 관세율이 수산물 평균관세율(4%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다) 일본 측 입장

- 국내 김 양식업자 보호를 위해 수입쿼터의 유지는 불가피하며 수출입 물량은 양국 민간단체 간에 결정하는 것임
- 관세인하는 UR에서 합의한 대로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나 김의 수급안정 및 김 양식업의 보호상 곤란함
- 일본측은 GATT 제11조 제2항 C호(국내 농어업 생산제한 조치 실시를 위한 수입제한) 및 GATT 제20조 G호(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수입제한)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

* 수입업체 인터뷰 내용

- 한국 김을 수입함에 있어서 일본의 수입할당제 제도운영으로 이 제도 안에 선착순할당을 받고 있는 당사에서는 판매계획을 세울 수 없고 물량이 적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어 IQ를 철폐하고 자유화된다면 판매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 (잇츠제팬 유한회사)
- 김에 설정되어 있는 IQ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아키토식품주식회사)

- 김의 수입이 자유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수출입업자로부터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1월에 한일정부간에 협의로 수입할당 범위를 향후 10년 후에 10억매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되어있기는 하나 일본과 한국 김은 포자가 다를 뿐 아니라 일본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면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짐. 따라서 계속하여 자유화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5) 차액관세제도

- 일본은 일부품목에 대해서 타국에서는 볼 수 없는 복잡한 관세제도인 차액관세제도(일정가격 이하로 수입시는 차액을 관세로 징수)를 도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혼동 및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차액관세제도 설명
 - 수입품의 과세가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일정액과의 차이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서 '71년 10월 돈육수입을 완전자유화하면서 일본국내양돈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일본국내의 가격안정제도와 연계시켜 수입돈육(지육 및 부분육) 등에 대해 도입한 제도임
 - 돈육의 예를 들면 부분육의 경우 일본 국내돼지고기 지육의 중심가격과 연동하여 분기점 가격을 설정한후 돼지고기 부분육의 수입가격이 동 분기점보다 고가로 수입될 경우에는 정률관세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며 저가로 수입될 경우에는 수입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관세로 부과함으로써 기준 수입가격 이하의 수입을 봉쇄하고 있음
- 차액관세 대상품목
 - 돈육, 밀크 및 크림, 버터밀크, 요구르트, 케피아 기타 발효시킨 것이나 또는 산성화된 밀크 및 크림, whey, 밀크에서 얻은 버터 기타 유지 및 dairy spreads, 완두콩, 팥, 강남콩, 소맥 및 메슬린(wheat and meslin), 대맥 및 裸麥, 라이소맥, 소맥분 및 메슬린분, 쌀가루, 보리가루, 라이소맥분, 전분 및 이눌린, 낙화생, 곤약구이모, 초콜릿 기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식료품, 맥아엑기스 및 전분, 밀, 전분 또는 맥아 엑기스의 조제식료품,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시킨 조제



식료품, 커피를 주로한 조제품, 밀크의 천연조성분의 함유량의 합계가 건조상태로 전 중량의 30% 이상인 조제품

나. 가격제한 조치 (면담조사)

- 한국산김치와 일본국내산 김치의 원가계산을 해보면 한국산의 경우 수입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산과의 경쟁력과 가격결정에 불리함. 따라서 현행수입관세율 9%를 절반이하로 낮출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잇츠제팬유한회사)
- 부산-시모노세키 웨리선박에 의한 12피트 컨테이너 수송에 대해서 제경비가 너무 비싸며 사용 후 잘 모르는 경비가 청구되고 있음 / 한국에서 수출가격에 통제가 있어 자유스러운 가격설정을 할 수가 없음(아키토식품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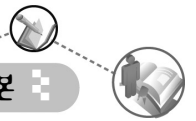
다. 기술, 행정적 조치

1) 원산지 표시 (면담조사)

- 배추는 물론 부원재료(특히 고춧가루, 마늘)의 원산지표시를 일본의 법령에 의해 철저히 해주기를 바람. 한국산김치라고 하면서 배합율이 높은 고춧가루나 마늘 등의 원재료를 중국산을 사용하여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도 있음. 더욱이 이러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 상품에도 김치군 마크가 붙어있음.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철저한 대응을 바람(주식회사 마루큐우)

2)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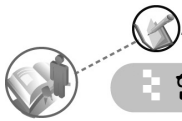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 일본은 '06. 5월에 PLS(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 758개 농약 등의 식품잔류 허용한도(잠정기준)를 고시로 설정하고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식품 잔류 허용기준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고 있음
- 이 제도로 인한 한국산의 위반상황은 2008년 7월말 현재 파리고추, 방울토마토, 청고추, 깻잎 등 총 11건으로 나타남



- 테부코나졸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08. 6. 30일부로 0.01에서 5.0ppm으로 완화되어 개정 고시됨에 따라 '08. 4. 18일부로 발동된 우리나라 풋고추 및 가공품에 대한 전수검사명령과 '08. 3. 18일부로 발동된 파리고추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30%) 조치를 해제하여 통상과 같은 빈도에 의거한 선 통관 후 검사로 환원되었음
- 7월까지의 위반 11건중 6건이 테부코나졸로서 이번 조치로 결과적으로 위반이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게 됨

■ 한국산 식품위생법 위반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 현황('08. 7월말 현재)

품명	수량 (kg)	농 약 검 출 내 용				일본잔류 허용기준	한국 기준
		통보일	통관항	성분명	검출치 (ppm)		
파리고추	1,191	'08.1.21	시모노세키	플루퀸코나졸	0.06	0.01	1.0
방울토마토	729	'08.3.7.	후쿠오카	플루퀸코나졸	0.06	0.01	0.7
파리고추	1,752	'08.3.13.	후쿠오카	테부코나졸	0.02	0.01	1.0
청고추	800	'08.3.18.	후쿠오카	테부코나졸	0.07	0.01	1.0
방울토마토	1,350	'08.3.19.	오사카	플루퀸코나졸	0.04	0.01	0.7
청고추	300	'08.4.14.	오사카	플루실라졸	0.03	0.01	1.0
청고추	300	'08.4.16.	오사카	테부코나졸	0.24	0.01	1.0
갯잎	192	'08.4.24.	시모노세키	비펜트린	0.55	0.1	2.0
청고추	560	'08.5.12.	시모노세키	테부코나졸	0.093	0.01	1.0
청고추	970	'08.5.19.	시모노세키	테부코나졸	0.162	0.01	1.0
청고추		'08.5.	시모노세키	테부코나졸	0.021	0.0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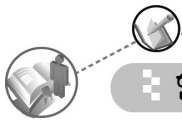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Ⅰ 2008년 한국산 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08. 7월 말 현재)

	위반월	품목	위반내용	통관항구, 공항	조치
1	1월	활 피조개	하리성패독 0.1MU/g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 검사
2	2월	즉석면(무과마)	지정의 첨가물 (폴리솔베이트 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 검사 2008.4.30기준이 개정 되어 첨가물로 지정됨
3	3월	모시조개	성분규격부적절 마라카이드그린 0.003ppm검출	모지	모니터링 검사
4	5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5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5	5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5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6	5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5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7	5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5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8	6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8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9	6월	건강식품Duolac3-Mlx Strain	사용기준부적절 폴리솔베이트 0.19g/kg검출	나리타	차주검사
10	6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5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11	6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6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12	6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6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13	6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6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14	7월	가리맛 조개	성분규격부적절 엔도스루환0.006ppm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15	7월	활 채첩	마비성패독검출 (4.73MU/g)검출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Ⅰ 2005년 한국산 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19건)

년 월	명품	위반내용	검역소	비고
2005.1	냉동복어	위생증명서없음	시모노세키	명령검사
2005.2	양식광어	성분규격부적합 (옥시테트라사이클린0.3 ppm 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5.3	청량음료수-알로에	제조기준부적합(살균부족)	후쿠오카	-
2005.4	(건조김)	사용기준부적합(이산화황 0.52 g/kg검출)	오사카	자주검사
2005.4	조미료	지정의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 검출)	간사이공항	자주검사
2005.5	조미료	지정의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 검출)	고베	자주검사
2005.5	고추	아플라톡신 양성(53 ppb)	나고야	명령검사
2005.6	생식용붉은색참깨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도쿄	모니터링검사
2005.7	생식용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150/g)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5.8	무가열섭취냉동식품:냉동콩나물	사용기준부적합 (소르빈산칼륨의대상외사용)	나리타공항	-
2005.8	무가열섭취냉동식품:냉동시금치	사용기준부적합 (소르빈산칼륨의대상외사용)	나리타공항	-
2005.8	냉동매운맛무	사용기준부적합 (소르빈산칼륨의대상외사용)	나리타공항	-
2005.8	생식용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150/g)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5.9	프라스틱 조미료케이스함)	재질별규격부적합(폴리프로필렌제의 뚜껑에서 납 540ppm 검출)	나고야	자주검사
2005.9	생식용냉장용패주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150/g)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5.10	냉동닭고기	성분규격부적합 (엔로플록사신0.44ppm 검출)	도쿄	모니터링검사
2005.11	어류내장가공품-명 태내장	지정의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 0.25g/kg검출)	요코하마	모니터링검사
2005.12	파프리카	성분규격부적합 (클로르피리포스 0.8ppm 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5.12	김치지짐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4.3×10 ⁵ /g)	요코하마	자주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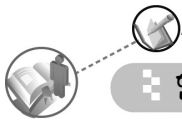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Ⅰ 2006년 한국산 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5건)

년 월	명품	위반내용	검역소	비고
2006.1	파프리카	성분규격부적합 (클로르피리포스 0.6ppm 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2	파프리카	성분규격부적합 (클로르피리포스 0.6ppm 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2	시럽가공품 생강차	정외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 사용)	간사이공항	모니터링검사
2006.5	어육제품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균 양성)	도쿄	자주검사
2006.5	무가열섭취냉동식품 (김치)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균 양성)	후쿠오카	자주검사
2006.6	단무지슬라이스	사용기준부적합(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으로써 1.2g/kg 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6	단무지	사용기준부적합(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으로써 0.70g/kg 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6	고추장	지정외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 0.16g/kg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7	마늘쫑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피리메타닐)	중주부공항	모니터링검사
2006.7	소금절임 단무지	사용기준부적합(사카린나트륨), 지정외첨가물(소르빈산나트륨사용)	시모노세키	자주검사
2006.7	양상추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 (테트라코나졸 0.07ppm검출)	중부공항	모니터링검사
2006.7	가열가공품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 6.3 X 10 ⁵ /g)	중부공항	자주검사
2006.7	생식용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1,400/g이상)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7	생식용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210/g이상)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8	생식용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290/g이상)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8	즉석면분말스프	지정외 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8	생식용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150/g이상)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8	건강식품사	사용기준부적합(안식향산의 대상외사용)	오사카	모니터링검사
2006.8	생식용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 비브리오 최확수(MPN)) 460/g이상)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9	무가열섭취냉동식품 (조미계장)	성분규격부적합(세균수5.7 X 10 ⁶ g)	나리타공항	자주검사
2006.9	생식용냉동조개류 (골뱅이)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균 양성)	시모노세키	자주검사
2006.9	조미료	지정외첨가물(폴리솔베이트사용)	도쿄	자주검사
2006.12	멜론	성분규격부적합 (클로르피리소스 - 잔류농약 0.03ppm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6.12	상추	성분규격부적합(지메트모르프 2.6ppm검출)	중부지방	모니터링검사
2006.12	분말청량음료	성분규격부적합 (세균수3.2 X 10 ⁴ /g검출, 대장균균양성)	도쿄	자주검사

Ⅰ 2007년 한국산 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31건)

년 월	명품	위반내용	담당검역소	비고
2007.1	금귤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 (인도키사카르브 0.05ppm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7.1	상추	성분규격부적합 (디메트모르프 8.5 ppm 검출)	중부공항	모니터링검사
2007.2	상추	성분규격부적합 (디메트모르프 6.7 ppm 검출)	중부공항	모니터링검사
2007.2	로얄제리-캡셀	성분규격부적합 (클로람페니콜 0.049ppm 검출)	시모노세키	자주검사
2007.2	금귤	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 (EPN 0.03ppm검출)	시모노세키	모니터링검사
2007.2	가열후섭취냉동식품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 양성)	시모노세키	자주검사
2007.4	활피조개	마비성패독 4.86MU/g검출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4	풋고추	성분규격부적합 (엔도브로포스0.05ppm검출)	요코하마	폐기, 회수지시
2007.4	스낵과자	지정의첨가물 검출 (TBHQ 26 μg/g검출)	나리타공항	폐기, 회수지시
2007.4	스낵과자	지정의첨가물 검출(TBHQ 35 μg/g검출)	나리타공항	폐기, 회수지시
2007.5	우롱차	성분규격부적합 (토리아조포스0.06ppm검출)	나리타공항	폐기, 회수지시
2007.5	냉장마지락조개	마비성패독 16.1MU/g검출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5	땅콩과자	아플라톡신 양성(14ppb)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6	냉동식품-굴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오사카	폐기, 회수지시
2007.7	제첩	성분규격부적합(엔도실판 0.02ppm검출)	시모노세키	(전량소비)
2007.7	제첩	성분규격부적합(엔도실판0.017ppm검출)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8	제첩	성분규격부적합(엔도실판0.007 ppm검출)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8	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비브리오최확수(MPN) 1100/g)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년 월	명품	위반내용	담당검역소	비고
2007.8	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비브리오최확수(MPN) 1100/g〕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8	무가열섭취냉동식품 - 굴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오사카	폐기, 회수지시
2007.8	생식용생선개류 냉장조개	성분규격부적합 〔장염비브리오최확수(MPN) 460/g〕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8	천연가막조개	성분규격부적합(엔도실판.007ppm)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9	냉장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 〔장염비브리오최확수(MPN) 1400이상/g〕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10	냉동어육제품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동경	폐기, 회수지시
2007.10	생식용냉동선어개류 : 새고막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11	생식용냉동선어류 : 토 막가다랑어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오사카	폐기, 회수지시
2007.12	분말청량음료 : 생강차	성분규격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12	명란젓	지정의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 검출) 사용기준부적합(아초산근 0.0077g/kg검출)	후쿠오카	폐기, 회수지시
2007.12	파리고추	확정된 양을 초과하여 잔류 (비텔라놀 0.16 ppm 검출)	후쿠오카	폐기, 회수지시
2007.12	스프	지정의첨가물(폴리소르베이트 검출)	시모노세키	폐기, 회수지시
2007.12	냉동식품 : 김치만두	성분규격부적합 (세균수 4.6×10 ⁵ /g검출)	도쿄	폐기, 회수지시

○ 면담조사 내용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따른 제경비의 증대

- 포지티브제도 도입에 따라 각 수입업자, 각 메이커 등에 있어서 검사기관, 부서에 드는 비용이 증대하고 있음.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관세감액의 교섭을 부탁함(주식회사 상키)

3) 통관지연 등 (면담조사)

- 김치수입 시에 식품검사 통관 상에서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에 후생노동성의 식품검사의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으로 유효기한 납품기한의 제약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말연시는 특히 어려운상황으로 각종 업자들은 연중무휴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공공기관서비스체제는 이에 대응이 부족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주식회사 상키)
- 통관지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는지 특히, 부산항 출항 시에 발생한 파업이나 수속절차의 지연정보에 대해서는 각 개별 메이커 대응이 아닌 공적기관에서 정보를 오픈하여 대응하고 대책까지 알려주기를 바람(주식회사 마루큐우)
- 한국 내 물류관계의 파업은 노동자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로 인해 수입자는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경비가 몇 배나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 선박편의 스케줄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음. 1주일 중에 선적이 가능하면 이상적이거나 출항일은 화, 금, 토요일에 집중되고 있다. 일요일 또는 월요일 출항의 배편이 있으면 좋겠음(아키모토식품주식회사)

4) 고관세 부과 등 (면담조사)

- 한국김치와 일본국산 김치의 경쟁이 이전보다 격화되고 있는 중에 변함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음. FTA협약에서의 최우선협약 사항으로서 검토를 부탁하고 싶음 (주식회사 마루큐우)
- 용기의 형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다는 것. 알루미늄 파우치와 같은 밀폐용기는 12%로 관세가 높다. 김치는 한 개의 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주식회사 마루큐우)
- 대일수출 가공식품 중 관심품목인 김치의 경우 관세율이 9%로 다른 식품류나 채소류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타 채소류와 비슷한 4.3% 수준으로 관세인하 요망됨. 김치의 원료가 되는 청과물은 4~5%로 한국의 수출업자는 물론 일본의 수입업자도 김치에 적용되는 관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음



라. 사회적 규제 (식품안전/환경 관련 등)

1) 엄격한 식품첨가제 허용 기준

- 국제관행보다 엄격한 식품첨가제 목록 규정은 외국 업체에 불리한 경쟁조건으로 작용함
- 주로 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국의 전통식품첨가제 위주로 사용허가
 - 저지방 마요네즈, 겨자크림, 소르빈산 칼륨이 첨가된 무화과 등 여러 국제표준 기구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품첨가제 사용 금지
 - 일본은 수확 후 살균제 사용을 식품첨가제로 분류하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이를 살충제로 분류함
- 품목별로 분류된 특정 식품 첨가제의 사용제한 규정이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음
 - 식품에 남아있지 않는 간접적 식품 첨가제(solvents)의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리고 불분명함
-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받고 있으나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협회의 의견을 들어, 인체에 무해한 것을 제외한 첨가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의 수입등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2) 냉동식품에 대한 솔빈산 칼륨 사용금지

- 인체 무해성이 인정된 솔빈산칼륨을 냉동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냉동 만두 대일 수출시 별도의 단무지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단무지 보존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솔빈산칼륨의 인체 무해성은 이미 인정된 바 있으나 냉동식품에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냉동만두 수출시 대일 수출용은 별도의 단무지를 만들어 수출

3) 신종식품첨가제 승인제도

- 식품첨가물로서 새롭게 승인받기 위해서는 약사·식품위생 협의회에서 법으로 정한 안정성 시험결과 및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심사시 대부분 국제연맹의 FAO/WHO, 일본의 하동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 (JECFA)의 결과를 참고

- 신중식품 첨가제 사용승인시 까다로운 과학 조사 시행

〈신중식품첨가제 승인시 필요절차〉

- 독성에 관한 검사 및 자료 검토
- 번식시험, 기형성 시험(차세대 영향의 확인)
- 발암성 시험
- 항원성 시험(알레르기 가능성의 확인)
- 변이원성 시험(유전자 및 염색체에 대한 영향의 확인)
- 일반 약리시험(피시험 동물의 생체기능에 대한 영향의 확인)
- 체내 동태에 관한 자료 검토
- 1일 섭취량에 관한 자료 검토

- 상기 검사 및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한국 시험자료를 제출시 인정하지 않아 이중 검사 부담이 있음

4) 기타 (면담조사)

- 배추 수입에 있어서 혼증 유무에 따라서 선도문제뿐 아니라 가격 등 설정에 큰 차이가 있음. 일본의 각 항구, 각 검역담당에 따라 기준이 다른 듯함. 따라서 제도적으로 확정하여 각 업자, 각 항구가 동등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람(주식회사 상키)
- 수입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 < 참 고 > 참조

마. 기타 규제 (면담조사)

- 수입식품은 전반적으로 본래 국내제조 이상의 검사를 거쳐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디어 보도로 수입품은 위험하다고 하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주고 있음. 수입경비나 수입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불만은 없으나 수입식품이 엄격한 검사를 거쳐 수입되고 있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 PR이 있었으면 함(잇츠제팬유한회사)



- 선박회사에 따라서는 single L/G(수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에서의 D/O(선박회사 발행 출하허가서)발행을 해주지 않는 회사가 있음. 특히 부산-시모노세키 웨리의 12피트의 경우로 요즈음에 Bank L/G(은행이 발행하는 수입자 허가서)를 요구하는 것은 오래된 예기로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하여야 하며 한국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아키토 식품주식회사)

■ 한일 NTM(비관세조치)협의회에서 한국이 일본에 요청한 사항

2003년 2월에 개최된 한일FTA공동연구회 회합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연구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한일쌍방은 2003년 5월 27일과 9월 1일 2회에 걸쳐 NTM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한국산의 해양수산물의 수입할당을 확대하는 것
- 활어 운반차 등의 한국의 특수차량이 일본의 도로를 주행하는 허가를 주는 것
-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
- 세관검사에 있어서의 소맥분조정품을 정의하는 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 또한 설탕을 첨가한 소맥분조정품을 소맥분으로 분류하는 취급을 개선하는 것
- 식품재료 수입업자에게 세관검사의 분석수법, 그 결과 및 검사결과 통지에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 주류소매업 면허의 요건을 명확화 하는 것
- 한국산의 조개에 대한 패독검사의 기간을 패독의 발생시기로 한정하는 것 및 양국의 당국사이에 한국이 조개류의 위생향상을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노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양국의 당국간의 협의회를 마련하는 것
- 한국산생굴에 대한 검역조치를 완화하여 일본의 시장에 있어서 한국산생굴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
- 수입 신선야채에 대한 검역의 건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
- 식품수입 시에 지정 검사기관에 의한 사전검사에 대해서 일본의 수입업자가 한국의 제조자로부터 얻은 식품샘플을 샘플로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3 진입장벽 피해사례

■ 미국의 2007년 외국 무역장벽 평가보고서에 대한 일본정부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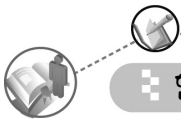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수입 정책

가. 쌀의 수입시스템

- (1)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쌀의 대부분이 비축, 식량원조 및 가공용으로 돌려져 소비자에게 직접 소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A(최저한의 수입의무)쌀의 소비자나 가공업자에게의 접근기회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만 수입되는 미국산 쌀의 상당수는 일본쌀과 비교해 품질이 약간 뒤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용 외에 업무용으로서 국산쌀과 브랜드 하여 이용되고 있어 소비자 전용으로 미국산 쌀로서 단품으로 소매되는 케이스는 적은 것이 사실임. 또한, 일반입찰로 수입되는 미국산 중립종의 주된 용도는 가공용이며 가공부문의 판매의 결과 남겨진 분을 재고로서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기관이나 피 원조국의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국제 룰에 준거하여 그 일부를 원조용으로서 공급하고 있음
- (2) 잔류농약 검사가 과다한 수입비용 증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은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미곡에 대해서 국가무역기업으로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을 조사하고 있음. 이것은 동법을 준수하고 수입미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관점 및 동법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잔류기준을 넘는 미곡이 수입되었을 경우의 반송이나 처분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는 관점에서 수출입 관계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임

나. 밀

- (1)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 밀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수입 밀의 매도가격에 대해서 198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 이상의 인하를 실시해 오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의 수요는 대체로 옆걸음으로 추이되고 있음



- (2) 2007년 4월부터는, 새로운 매도제도로 이행하고 수출가격에 연동한 가격형성을 실시하고 있어 본건에 대해서는 미국의 밀 업체 등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실시하여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음. 덧붙여 국가 무역제도가 관세에 비해 무역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밀의 매도가격은 WTO 협정에 근거하는 양허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있어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

다. 쇠고기 · 돼지고기 (관세의 긴급조치)

- 일본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시에 어려운 국내생산 사정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수출국과 협의결과, 라운드의 합의로 양허한 수준을 웃도는 관세의 자주적인 인하조치를 받아 들였음. 쇠고기 · 돼지고기와 관련되는 관세의 긴급조치는 그 대상으로서 같은 관계국과의 협의결과, 도입되었음. 따라서 본보고서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합의인 것에 언급하지 않고 본건 조치가 비판되고 있는 것은 부당함
- 덧붙여 본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최근의 사실로서 쇠고기와 관련되는 관세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최근의 쇠고기의 가격 및 소비동향 등에 비교하여 2007년도의 특례조치로서 2006년도에 이어 계속하여 발동기준수량을 산출할 때의 기초가 되는 수입수량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시킨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라. 식품성분 정보개시

- 식품 등 수입신고에서 원료정보의 기재의무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본 절차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정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음
- 또한 기업 등의 제품에 관한 정보가 잠재적인 경합상대에 대해서 공표 되어 버리는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지만, 식품 등 수입신고와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보유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개되지 않음
- 덧붙여 식품성분 등의 백분율(%)의 개시가 요구된다고 하는 기술이 있지만, 식품첨

가물 등으로 사용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확인하고 있어, 모든 원재료에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마. 임산물

- 관세에 의해 미국산의 임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임산물에 적용되는 일본의 평균관세율(2.1%)은, 다른 선진국(캐나다 1.1%, 미국 1.2%, EC1. 4%, 뉴질랜드 2.4%)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음
- 또한, 임산물의 자유화에 일본이 저항하고 있다는 기술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나 유한천연자원의 지속적 활용의 관점을 감안한 것임. 관세수준의 측면만을 파악해 일본의 임산물 수입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임



기준 · 시험 · 표시 · 인증

가. 쇠고기

- 수입조건의 완화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우선은 현행의 수입조건의 준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각 국가는 과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조치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반복 지적해 왔고 이를 재차 확인

나. 농약 등의 잔류기준

- (1) 잔류농약의 위반 발견 시에 있어서의 검사 강화는 CODEX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수입 시 검사결과 및 수출국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출국의 농약의 사용 · 잔류의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음
- (2) 국산식품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에서 농약의 사용 · 잔류의 관리체제가 정비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해서 원인구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음



- (3) 따라서 농약의 사용·잔류의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강화의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의 관점에서 염려가 있다는 지적은 적당하지 않음
- (4) 미국에 대해서는 작년 5월 이후 제출을 요구해 온 농약의 사용·잔류의 관리상황 등의 관계자료가 금년도 1월에 제시되어 해당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을 송부하고 있음

다. 식품첨가물

-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어 더욱 범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의 지정에 대해서 일본에서 진전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가가 주체적으로 지정을 향한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는 미지정 첨가물 46품목에 대해서는, 7품목의 지정을 끝내 현재 29품목의 평가를 독립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에 의뢰하고 있고, 지정을 향한 수속을 착실하게 실시하고 있음

라. 가금류

- 일본의 수입금지 조치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병원성인 H5 또는 H7아형의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변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일본에서는 미국에 대해 주(州)단위로의 수입정지 조치라고 하는 방역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이 때문에 가금류 무역에 손해를 「불필요하게」 생기게 했다는 지적은 적당하지 않음

4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 현재 수산물의 수입할당품목(IQ)은 19품목으로 김의 경우도 이 안에 해당되고 있어 이들 수입이 자유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수출입업자로부터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관세 장벽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일본의 PLS목록에 우리나라 농약시스템 및 작물 적성심사에 대한 자료 등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
- 현행 ID등록제도에 의한 등록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ID등록업체 및 품목은 선통관 후 검사제도 적용토록 추진(현재 등록품목은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뿐임)
- 일본의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의 증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기술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우리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또한 일본소비자들은 고품질을 선호하고 취향도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일본인의 성격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 엄격한 품질, 까다로운 규격, 정확한 납기, 낮은 불량률의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업체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구조적인 장벽의 비판에 앞서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참고]

I. 수입 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제1_ 취지

수입자(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 등 식품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법률 제48호)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스스로가 식품의 안전 확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식품공급 행정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이하 『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 자주검사의 실시 등에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바탕으로 수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사항을 정하고 자주적인 위생관리의 실시를 추진해 왔으나, 이번 식품에 의한 약물중독 사건의 발생에 따라 수입가공식품의 수출국에서의 원재료, 제조·가공, 보관, 수송 등 각 단계에서 일본 국내와 동등한 안전성의 확보와 그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본 지침(가이드라인)은 유독, 유해물질 등 혼입방지와 더불어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에서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관한 기본적 지도사항을 한층 구체화하고 수입가공식품의 자주위생관리를 추진하여 안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수입수속 이후의 일본 내에서의 보관, 수송, 제조·가공, 판매 등의 단계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는 이외에 유통식품의 유독유해물질의 혼입방지 등에 관한 관계법령 및 통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1) 식품안전기본법 제8조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

(참고2)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 사업자의 책무]

(참고3)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7년 법률 제103호) 제3조 [국가시책 등]

제2_ 대상

본 지침은 해외의 제조자와 직접 계약하여 대일수출제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수입자 외에 가공식품의 수입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외 제조자와 직접적인 제조 위탁계약 관계에 없는 수입자라도 수출국측의 수출업자 등을 통해서 본 지침에 따른 사항을 제조자에게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제3_ 확인체제

수입자는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있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두고 본 지침에 따른 사항의 확인을 실시한다.

제4_ 확인사항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의 제조자에게 수출국의 식품위생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실시상황, 제조자의 위생관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일수출품의 제조 시(검사 및 검증을 포함.), 계약의 갱신 시 및 문제발생 시에 문서에 의한 확인과 더불어 현지조사, 주재원의 설치, 시험검사 등에 의해 필요한 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확인 시에는 제조자의 원재료에 관한 기록, 제조관리에 관한 기록, 제품에 관한 기록, HACCP 관련 기록 등을 활용한다.

1. 수출국 정부에 의한 감독 등

수입자는 제조자에게 수출국 정부에 의한 감독, 제조시설의 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의 수준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할 것.

- (1) 수출국의 법 규제를 준수하여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이 실시되고 있을 것. 특히 수출국에 있어 제조시설의 등록제도, 제품의 수출허가제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고 있을 것

(참고4) 수입품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2007년 7월 20일 수입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긴급 관민합동 회의자료)

- (2) 제조시설의 시설설비의 수준이 일본의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것



- (참고) 도축장법시행령(1953년정령제216호)제1조(일반도축장의 구조설비의 기준)
- (참고) 식용조류처리 사업의 규칙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990년후생성령제40호) 제2조(구조설비 기준)
- (참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시설기준의 준칙(1957년9월9일자衛環 發제43호 별첨)

- (3)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이 일본의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다음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것. 또한 HACCP에 의한 위생관리법에 따르는 것도 유효하므로 이의 적극적인 도입이 권장됨
- ① 농림수산물의 채취에 관한 위생관리
 - ② 식품취급시설 등의 위생관리
 - ③ 식품취급시설 등의 식품취급자 등의 위생관리
 - ④ 식품취급 시설 등의 식품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참고)

- 식품 등 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관리운영기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2004년 2월 27일자 食安發 제0227012호 별첨). 이하 「관리운영기준에 관한 지침」이라 함)
-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 승인제도 실시요령(2000년11월6일자生衛發 제1634호 별첨)

2. 원재료의 매입 단계

수입자는 제조자에게 원재료의 매입 단계에서의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것

- (1) 원재료마다 일본 법에 의한 규격기준을 포함하는 품질규격을 정하고 납입 로트별로 이에 적합함을 확인할 것. 구체적으로는 특정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자재의 사용상황 등이 분명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원재료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식품 등 일반 (공통사항)
 - 원재료인 농축수산물의 채취에 있어서 먼지 또는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및 유독물질, 폐기물 등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 비료, 분편 등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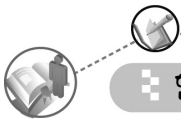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원재료인 농축수산물의 채취, 보관 및 수송에 있어서 쥐, 곤충, 화학물질, 이물,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일본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
- 일본법에 의한 규격기준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 또한 사용량 등이 적량일 것
- 신선야채나 신선 어패류 등에는 착색료 등 품질, 선도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첨가물 등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
- 일본법에 의한 성분규격, 제조·가공기준 등 규격기준에 적합할 것
- 일본법에 의한 규격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살균 등이 실시되지 않았을 것
- 사용된 원재료 및 첨가물의 정확한 명칭, 조성 등이 분명할 것
- 일본의 약사법(1960년법률제145호) 상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
- 수출국에서의 섭취경험 등이 있을 것

②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자연 독을 포함한 경우는 제조, 가공 등에 의해 자연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채취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 아닐 것
-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상황이 확인되고 있을 것
- 일본법에 의한 농약의 잔류기준에 적합할 것
- 일본법에 의한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혼입방지 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수확 시 및 수송·보관 시에 곰팡이의 발생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③ 축산물 및 그 가공품

- O157, 리스테리아균 등 병원미생물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생산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이 아닐 것
- 생산지역이 우해면상뇌증과 관련되는 수입금지대상국·지역이 아닐 것
- 우해면상뇌증과 관련되는 특정위험부위를 포함하지 않을 것
- 우해면상뇌증과 관련되는 수입금지대상국·지역 유래의 쇠고기 등의 혼입 또는 사용이 없을 것
-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의 사용상황이 확인되고 있을 것
- 일본법에 의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의 잔류기준에 적합할 것



④ 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미생물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패류는 패독의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에서 채취될 것
- 복어는 수입이 인정된 어종일 것
- 복어는 어종감별에 의한 이중 복어의 혼입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어획해역의 확인, 어종감별에 의한 유독어의 혼입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의 사용상황이 확인되고 있을 것
- 일본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의 잔류기준에 적합할 것

(2) 상기(1)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시험검사 등에 의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또한 잔류농약 등은 대상농산물에 대한 사용약제, 살포기록 등의 사용상황, 토양·수질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3) 원재료에 기생충, 병원미생물, 유독물, 부패물, 변패물 또는 이물을 포함함이 분명한 경우로서 통상의 가공, 조리 등으로는 이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멸 또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원재료를 매입하지 말 것

(4) 수입자는 수출국 행정기관 등에 의한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가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샘플을 수입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시험검사에 의한 확인을 할 것

(5) 원재료마다 적절한 로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참고)

- 관리운영기준에 관한 지침
- 수입자에 대한 기본적 지도사항(2008년 3월 31일자 食安發제0331001호 별첨별표 2. 이하 「기본적 지도사항」이라 함)

3. 제품의 제조·가공 단계

수입자는 제조자에게 제품의 제조·가공 단계에서의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것.

(1) 위생적인 환경 하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지기 위한 관리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특히 유독, 유해물질의 혼입방지대책으로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실시할 것

① 시설·설비 등의 위생관리

- 창 및 출입구는 개방하지 않을 것. 불가피하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먼지, 쥐,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기계기구 및 분해된 기계기구의 부품은 금속편, 이물, 화학물질 등의 식품에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세정, 살균 및 소독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보관은 소정의 장소에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할 것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도마, 칼, 보호방구(防具) 등은 오염 시마다 또는 작업 종료 후에 세정소독을 충분히 할 것
 - 세정제, 살균제, 소독제, 기타 화학물질은 그 용기에 명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관리기록, 보관설비가 정비되어 있는 등 식품에의 혼입방지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외부인이 무단으로 시설부지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설 관리가 되어 있을 것
- ② 쥐 및 곤충대책
- 시설 및 그 주위의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되어 쥐 및 곤충의 번식장소가 없도록 하고, 방충망, 덧 등의 시설에 의하여 시설내로의 침입방지가 강구되어 있을 것
 - 쥐약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취급을 적절히 할 것
 - 원재료, 제품, 포장자재 등은 용기에 넣어 바닥, 벽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 ③ 폐기물 및 배수의 취급
- 폐기물의 보관 및 폐기방법에 대한 수순이 정해져 있을 것
 - 폐기물의 용기는 다른 용기와 명확하게 구별되어 오액(汚液) 또는 오취(汚臭)가 새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할 것
 -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식품취급구역 또는 보관구역(인접하는 구역을 포함.)이 아닌 곳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
 - 폐기물 및 배수의 처리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것
- ④ 식품 등 취급
-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에서 병원미생물 등 및 그 독소가 안전한 양까지 사멸 또는 제거되어 있을 것
 - 원재료 및 제품의 금속, 유리, 먼지, 세정제, 기계유 등 이물의 혼입방지 조치가 강구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검사가 실시되고 있을 것
 - 분할 또는 세절된 식육 등은 이물의 혼입이 없음이 확인되어 있을 것. 이물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용기포장은 위생적이고 제품을 오염이나 손상에서 보호하고 적절한 표시를 한 것이 사용되고 있을 것
- 포장자재 또는 봉입 가스는 무독으로 보관 시 또는 특정 사용조건 하에서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것일 것

⑤ 사용수(水) 등의 관리

- 식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 (이하 「사용수」라 함) 은 음용에 적합할 것. 또한 시설 내에서 식품제조에 직접 관계가 없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이나 냉각 등 식품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사용수로의 혼입방지가 강구되어 있을 것
- 사용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실시되고 있을 것. 또한 불의의 재해 등에 의해 수원 등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
-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것
- 우물물, 자가용 수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균장치 또는 정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확인 및 기록하고 있을 것
- 얼음은 적절하게 관리된 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음용수로 만들어지고 있을 것
- 사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⑥ 식품취급자의 위생관리

- 식품취급자에게 위생적인 작업복, 모자, 마스크 및 전용의 신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식품취급시설 내로의 이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의 입 퇴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용무가 없는 사람의 식품취급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하고, 식품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청결한 전용복을 착용시키며 는 것과 동시에, 시설내의 위생 관리 규정에 따르게 하는 것

(2) 식품취급시설 또는 그 부문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정하고 있을 것

(3) 최종제품이 법에 의한 규격기준에 적합함을 정기적인 시험검사에 의해 확인하고 있을 것. 또한 수입자는 필요에 따라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또는 일본 국내의



시험검사에 의해 확인할 것. 제품의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확인사항은 2의(1)에 나타난 사항에 준함

(4) 제품마다 적절한 로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참고)

- 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지침
- 기본적 지도 사항

4. 제품의 보관·수송·유통단계

수입자는 제조자에게 제품의 보관·수송·유통 단계에서의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것

- (1) 제품의 보관, 수송 및 유통 시에 위생적인 취급을 하고 유독, 유해물질의 혼입 방지 대책으로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할 것
- ① 살충제 등의 적절한 취급에 의한 식품에 대한 오염방지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② 수송에 이용되는 차량, 컨테이너 등은 식품이나 용기포장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닐 것. 또한 용이하게 세정·소독이 가능한 구조의 것이 사용되어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것
 - ③ 식품 및 식품 이외의 화물과 혼재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식품을 적절한 용기에 넣는 등 식품 이외의 화물과 구분하고 오염방지가 강구되어 있을 것
 - ④ 수송중의 식품이 먼지나 유독가스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 ⑤ 품목이 다른 식품이나 식품 이외의 화물 수송에 사용한 차량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 세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 ⑥ 적절한 로트 관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수량 및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 등의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 (2) 상기(1)에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 ①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 관리가 실시되고 있을 것
 - ② 사고나 부적절한 온도관리 등에 의한 부패 또는 변패가 없을 것
 - ③ 보존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이를 준수하고 있을 것
 - ④ 염장 등 식품 등을 장기간 옥외에 보관하는 일이 없을 것
 - ⑤ 외부인이 무단으로 시설부지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설관리가 되고 있을 것



(참고)

- 관리 운영 기준에 관한 지침
- 기본적 지도 사항
- 114호 사건과 관련되는 식품의 안전 확보 및 독극물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1984년12월20일자衛食제102호藥發제999호)

제5_ 회수, 폐기

1. 회수수순의 책정

수입자는 스스로가 수입한 식품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의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에 관련된 책임체제, 구체적인 회수방법, 관계 행정기관에의 보고 등 수순을 미리 정할 것. 다음은 회수에 관한 수순의 참고 예시임

(1) 회수계획의 책정

- ① 로트코드 시스템의 구축
- ② 제품출하·판매기록의 보관
- ③ 有症苦情(식품섭취 후 구토, 복통, 설사 등 신체에 이상증상이 나타난 불만 사례) 파일의 작성
- ④ 회수팀의 편성
- ⑤ 회수절차의 규정
- ⑥ 소비자에의 연락방법 규정
- ⑦ 회수제품의 처리방법 규정
- ⑧ 회수 진척상황 및 회수결과에의 평가방법 규정

(2) 회수의 개시 (관계행정기관에의 보고사항)

- ① 회수원인
- ② 회수대상 식품
- ③ 대상 식품의 유통지역
- ④ 대상 식품의 수량

(3) 회수후의 조치

- ① 회수계획의 평가



- ② 필요한 보상조치의 실시
- (4) 회수기록의 작성·보관
- ① 회수품의 명칭 및 로트번호
 - ② 회수이유
 - ③ 제조사의 모니터링 기록
 - ④ 최종제품의 검사기록
 - ⑤ 보관, 출하 및 유통에 관한 기록
 - ⑥ 회수대상 제품의 범위
 - ⑦ 회수 및 소비자에 대한 고시방법 및 루트
 - ⑧ 행정기관에의 연락
 - ⑨ 회수수량
 - ⑩ 회수후의 검사결과
 - ⑪ 회수제품의 처분방법
 - ⑫ 회수효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회수계획 등의 변경유무
 - ⑬ 회수에 따른 보상내용에 관한 기록

(참고)

- 관리운영기준에 관한 지침

2. 폐기조치

수입자는 회수된 제품에 대한 폐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할 것. 또한 회수된 해당 제품은 일반제품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보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하게 폐기 등 조치를 강구할 것

(참고)

- 관리운영기준에 관한 지침

3. 공표

수입자는 회수 등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소비자에의 주의환기 등을 위해 해당 회수 등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 고려할 것



제6_ 기타

1. 일본의 식품위생 규제의 교육 등

수입자는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는 식품의 제조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식품위생규제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국내외 유사 식품의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을 도모할 것

또한 필요에 따라서 현지시설에 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위생지도 등을 실시하고 기술, 지식 및 의식 수준의 공유화를 도모할 것

2. 적정표시

수입자는 스스로가 수입하는 식품의 표시내용이 일본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행정기관 등에 사전에 조회 등을 하여 확인할 것

3.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수입자는 스스로가 수입한 식품의 유통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식품에 관한 수입시의 기록, 판매시의 기록 등의 적절한 작성 및 보존에 노력할 것

(참고)

- 식품위생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 사업자의 기록작성 및 보존과 관련되는 지침 (가이드라인) (2003년8월29일자 食安發제0829001호 별첨)

4. 시험검사

수입자는 시험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취급에 있어서 정확성 및 정도 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 (참조 1) 식품안전기본법 제8조 [2003년 법률 제48호]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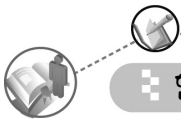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제8조 비료, 농약, 사료, 사료첨가물, 동물용의 의약품 기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림어업의 생산자재, 식품(그 원료 또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농림 수산물을 포함) 혹은 첨가물(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첨가물을 말함) 또는 기구(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구를 말함) 또는 용기포장(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용기포장을 말함)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기타의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이하 「식품관련사업자」라고 함)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식품의 안전성확보에 대해 우선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식품공급행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강구할 책무가 있음

2. 전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식품관련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업 활동과 관련되는 식품 기타 것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2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식품관련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련하는 시책에 협력할 책무가 있다

❖ (참조 2) 식품위생법 제3조 [1947년 법률 제233호]

[식품 등 사업자의 책무]

제3조 식품 등 사업자(식품 혹은 첨가물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고 혹은 판매하는 것, 혹은 기구, 혹은 용기포장 제조, 수입하고, 혹은 판매하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법인 또는 학교, 병원 기타 시설에 대해 계속적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사람 혹은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그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다수의 사람에게 수여하고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판매식품 등」이라 함)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되는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판매식품 등의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 판매식품 등의 자주검사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식품 등 사업자는, 판매식품 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 방지에 필요한 한도에 대해서 해당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해서 판매식품 등 또는 그 원재료의 판매를 하는 자의 명칭 기타 필요한 정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것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식품 등 사업자는, 판매식품 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록을 정부, 도도부현(道都府縣) 등에 제공하고 식품위생상 위해원인이 된 판매식품 등의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확하고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참조 3) 식품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7년 법률 제103호) 제3조

[정부시책 등]

제3조 정부는 유통식품에 독물이 고의적으로 혼입, 첨가되거나 혹은 도포되는 것 또는 독물이 혼입, 첨가되어 혹은 도포된 음식물이 고의로 인해 유통식품과 혼입되어진 것 (이하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이라 함)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준하고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유통식품의 제조(채취 및 가공을 포함.),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는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의 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시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 (참조 4) 수입품에 관한 대응에 대해 (2007년 7월 20일 수입품의 안전확보에 관한 긴급 관민합동 회의자료)

최근에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식품, 펫푸드, 소비생활용품 등에 위험한 물자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의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 보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계 정부기관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는 중에 있다. 현시점에 있어서 수입품에 대한 문제 사안이 빈발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수입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필요에 따라서 수출국 정부와도 제휴하면서 수입품의



안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입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금까지 사안에 대한 대응

- 수입품에 관한 안전대책은
 - ① 수출국의 단계 (수출국 대책)
 - ② 수입의 단계 (검역대책)
 - ③ 국내유통의 단계(국내대책)로 대응하고 있다.
- 이 중에서 ①의 수출국의 단계에서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수출기업의 등록, 수출 전 검사의 실시 등의 대책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2국간의 외교루트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요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② 및 ③은 기본적으로 국내대책으로 먼저 수입의 단계에서는 검역에서의 검사에 의한 체크, 위험한 식품·제품 등 및 그 생산·제조·수입업자의 파악 등의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수입 후의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위험한 식품·제품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회수 등이 이루어진다. 이것과 더불어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위험한 식품·제품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주의환기나 업자에게 정보의 주지·철저 등의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2. 향후의 대응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도록 한다.

가. 수출국과의 정보교환·제휴

- 수출국과의 정보교환 등에 의해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함과 동시에 수출국과도 연계한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품 등이 수입되도록 한다.
- 당분간 중국정부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취한다.

- (1) 식품(유아용 장난감을 포함. 이하 같음) 분야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13일부로 담당 대신간의 각서중인 「식품안전의 과제에 대한 대화 및 협의(I)」, 「양국 국내의



관계법령 등에 관한 정보교환(Ⅱ1)」 및 「기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한 협의(Ⅳ)」의 일환으로서

- ① 중국 국내법에 위반하여 생산, 제조 가공된 식품의 대일수출 방지
 - ②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준수한 식품의 대일수출의 확보
 - ③ 중국의 대미수출 식품에의 대응과 대일수출 식품에의 대응과의 관계확인
- 3항목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재 북경대사관을 통해서 중국당국에 전한다.

- (2) 소비생활용품과 관련되는 제품 사고대책에 대해서 2007년 4월에 담당 대신 간에 각서를 체결하고 사고정보에 관한 정보교환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 향후, 본 계획에 의한 협의개최를 통해서 대일수출시에 일본 관계법령이나 안전기준 등의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간다.
- (3) 다른 수입품에 대해서도 재경대사관 등을 통해서 또 일중 경제공동협회의 골조도 활용하여 정보교환·제휴를 도모해 간다.

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적인 조치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제품 등에 대한 문제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 (1) 제품 등의 수입상황 파악
식품, 의약품, 소비생활용품 등의 수입품에 대해서, 무역통계 등에 기초를 두어 수입량, 수출국 등을 정기적으로 안전규제부국에서 파악한다.
- (2) 안전관련 정보수집 체제의 강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식품·제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폭넓게 수집한다.
- (3) 수출국 측의 안전관리 체제의 조사와 협력
수출국 측의 식품·제품 등의 안전관리 체제에 대해 상대국의 협력을 얻고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서 기술면의 협력을 검토한다.



(4) 수입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전 확보에 대한 요청

해외로부터의 식품·제품 등의 안전성의 우선적 책임을 지는 수입자에 대해 상기의 정보를 적시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한층 더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요청한다.

- 더욱이 수출국 정부와의 정보교환, 정보수집 등을 통해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제품 등의 정보를 접했을 경우에는 도도부현(道都府懸), 관계단체에 대해 또한 국민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필요에 따라서 방문검사, 조사 등도 기동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한 분야별의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① 검역소 및 (사)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에서 수입업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식품수입 시에는 수출국에서 위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기관이나 수출자, 제조자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

－수입하고 있는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식품의 원재료, 첨가물, 제조방법, 검사 데이터가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할 것에 대해 요청한다.

② 영업·판매목적의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모두 신고되어 검역소에서 심사하고 연간계획에 의한 추출검사인 모니터링검사, 검사명령에 의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식수산물의 항생물질의 잔류 등에 대해서는 해외정보를 수집해 일본에 수입되는 관계식품에 대한 검사 명령실시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2) 의약품 등

해외로부터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한 제조판매업의 허가 제도를 통해서 안전관리 체제를 정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안전성 등에 대한 일본의 심사를 받게 하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 성분을 표시시키도록 되어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정확·신속히 반영하여 문제가 되는 제품이 수입되지 않게 조치한다.

(3) 소비생활용품

경제산업성은 월1회 개최하고 있는 제품안전 점검일을 이용하여 향후,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안전대책에 대해 주의환기를 호소한다. 또한 제품사고의 우려가 높은 제품정보를 입수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미디어를 총동원해 소비자에게 주의환기를 추진한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등에서 얻은 「히야리·하트 정보」 등에 의해 사고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시험구입검사나 입회검사 등을 기동적으로 전개하여 그 결과에 의해 소비자에게 주의환기 등을 한다.(예 : 전기스토브의 리모콘에 의한 오작동 정보에 의한 시험구입검사를 실시. 그 결과에 의해 기술기준을 강화)

(4) 사료

- ①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안전법에 의해 국가가 일정규격을 정해 이에 합치하지 않는 것의 제조나 수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독)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가 수입·제조업자 등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미국에서의 패트푸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사료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해외관계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도도부현, 수입업자, 관계단체 등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성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료안전법에 의한 입회검사를 기동적으로 실시한다.
- ③ 또한 (독)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 의한 수입시의 검사건수를 늘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만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현행제도에 의해 제조,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한다. 분야별의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해당식품이 유통되지 않게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며 향후도 계속하여 다음의 대응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한다.

-수입 시 검사 등에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입자등에 해당식품의 폐기나 반송 등을 명하여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경공관을 통해서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고 원인구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한다.

-필요에 따라서 수입 시 검사강화를 실시한다.

-관계 사업자명을 포함한 위반에 관한 정보를 HP 등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2) 의약품 등

문제가 되는 물질이 혼입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고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의 엄한 조치를 취한다.

(3) 소비생활용품

경제산업성은 금년 5월에 개시한 중대사고 정보수집·공표제도에 의해 중대사고 발생의 보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것을 공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해 수입업자에 대해 제품회수를 지도하는 등 사고의 재발·확대방지를 신속히 도모한다.

또한 출하·수입을 규제하는 제품 안전4법(소비생활용품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단속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험구입 검사 등을 통해서 발각된 기술기준 위반 등이 판명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포함해 엄격한 대응을 도모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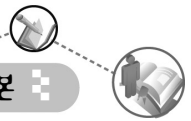
(4) 사료

가축 등에 대한 건강피해나 축산물 등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료안전법에 의해 제조, 수입,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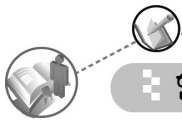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II. 일본의 주요품목 관세율 ('08. 7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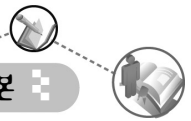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20311020	돼지고기(신선, 냉장)의 도체, 이분도체과세가격이 1kg당 도체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 이하의 것	5%	361엔/kg
020311030	돼지고기의 과세가격이 1kg당 적용한도 가격을 초과하며 도체에 관련된 분기점가격 이하의 것	5%	361엔/kg
020311040	돼지고기의 과세가격이 1kg당 도체에 관련된 분기점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20312023	돼지고기 넓적다리살, 어깨살 절단(뼈 포함)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312021	돼지고기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을 초과하며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312022	돼지고기의 과세가격이 1kg당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20319023	돼지고기 기타의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319021	돼지고기 기타의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가격을 초과하고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319022	돼지고기 기타의 과세가격이 1kg당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 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20321020	돼지고기(냉동)의 도체, 이분도체 과세가격이 1kg당 도체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가격 이하의 것	5%	361엔/kg
020322022	냉동 돼지고기의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을 초과	5%	4.3%
020321030	냉동 돼지고기 과세가격이 1kg당 도체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가격을 초과하며 도체에 관련된 분기점가격 이하의 것	5%	361엔/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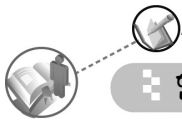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20321040	냉동 돼지고기의 과세가격이 1kg당 도체에 관련된 분기점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20322023	냉동 넓적다리살, 어깨살 분할(뼈 포함)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322021	냉동 돼지고기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가격을 초과하며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322022	냉동 돼지고기의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20329023	냉동 돼지고기 기타의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이하의 것	5%	482엔/kg
020329021	냉동 돼지고기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대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을 초과하고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329022	냉동 돼지고기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 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20630091	돼지고기 식용 부산물(신선, 냉장) 장기	10%	8.5%
020630093	식용부산물(돼지)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이하의 것	5%	482엔/kg
020630092	식용부산물(돼지)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을 초과하며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630099	식용부산물(돼지)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 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20641090	식용부산물(돼지) 간장(냉동)	10%	8.5%
020649091	식용부산물(돼지) 장기(냉동)	10%	8.5%
020649093	식용설육(돼지)(냉동) 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종량세 적용한도 가격이하의 것	5%	482엔/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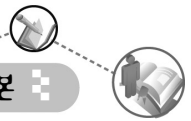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20649092	식용부산물(돼지)(냉동)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총량세 적용한도 가격을 초과하며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 가격 이하의 것	5%	482엔/kg
020649099	식용설육(돼지)(냉동)과세가격이 1kg당 부분육에 관련된 분기점 가격을 초과하는 것	5%	4.3%
030710100	생굴(냉장,냉동)	10%	7%
060110010	백합속(구근/휴면중)	무세	무세
060120000	구근(생장중)	무세	무세
060240000	장미(분화)	무세	무세
060290090	선인장	무세	무세
060311000	장미(절화)	무세	무세
060312000	카네이션(절화)	무세	무세
060313000	양란(절화)	무세	무세
060314000	국화(절화)	무세	무세
060319010	기타(절화/백합속)	무세	무세
060319090	기타(절화/기타)	무세	무세
060390000	기타(절화)	무세	무세
070110000	감자 종자용(신선 및 냉장)	5%	3%
070190000	감자 기타(신선 및 냉장)	5%	4.3%
070200000	토마토(신선 및 냉장)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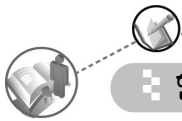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70310011	양파(신선 및 냉장)	10%	8.5%
070310012			
070310013			
070310020	쪽파(신선 및 냉장)	5%	3%
070320000	마늘(신선 및 냉장)	5%	3%
070390010	파(신선 및 냉장)	5%	3%
070410000	컬리플라워(신선 및 냉장)	5%	3%
07042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신선 및 냉장)	5%	3%
070490010	브로콜리(신선 및 냉장)	5%	3%
070511000	결구상치(신선 및 냉장)	5%	3%
070521000	위트루우프 치커리(키코리엄 · 인듀부스변종 포리오스무) (신선 및 냉장)	5%	3%
070610000	당근 및 순무(신선 및 냉장)	5%	3%
070690010	우영(신선 및 냉장)	5%	2.5%
070700000	오이류(신선 및 냉장)	5%	3%
070810000	완두(피섬 새티범)(신선 및 냉장)	5%	3%
070820000	콩(비그나종, 파세리스종)(신선 및 냉장)	5%	3%
070890000	기타 두류(신선 및 냉장)	5%	3%
070910000	구상의 양영경퀴(신선 및 냉장)	5%	3%
070920000	아스파라거스(신선 및 냉장)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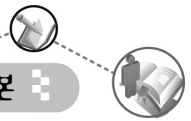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70930000	가지(신선 및 냉장)	5%	3%
070940000	셀러리 (신선 및 냉장)	5%	3%
070959011	송이버섯(신선 및 냉장)	5%	3%
070959020	표고버섯(신선 및 냉장)	5%	4.3%
070959090	기타(신선 및 냉장) 새송이, 팽이등	5%	4.3%
070960010	고추속, 피멘타속 파프리카(신선 및 냉장)	5%	3%
070960090	고추속, 피멘타속 기타(신선 및 냉장)	5%	3%
070970000	시금치류(신선 및 냉장)	5%	3%
070990010	스위트콘(신선 및 냉장)	10%	6%
070990091	호박(신선 및 냉장)	5%	3%
071010000	감자(냉동)	10%	8.5%
071021000	완두(냉동)	10%	8.5%
071022000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냉동)	10%	8.5%
071029010	팥콩(냉동)	10%	6%
071029090	기타(냉동)	10%	8.5%
071030000	시금치류(냉동)	10%	6%
071040000	스위트콘(냉동)	12.5%	10.6%
071080030	우영(냉동)	20%	12%
071080010	브록콜리(냉동)	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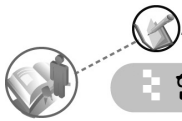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71080090	기타채소(냉동)	10%	6%
071090200	기타 야채를 혼합한 것(냉동)	10%	6%
071120000	올리브(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30000	케이퍼(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40000	오이류(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51000	버섯(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59000	기타(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90012	가지(1개의 중량이 20그램 이하의 것) (일시적 보존처리 한 것)	10%	6%
071190013	염교(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0%	6%
071190019	고사리(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0%	6%
071190093	우영(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20%	12%
071190093	기타(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90091	가지(1개의 중량이 20그램 이하의것을 제외) (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90092	연근(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190099	기타채소(일시적 보존처리한 것)	15%	9%
071220000	양파(건조)	15%	9%
071231000	버섯(건조)	15%	9%
071232000	목이버섯(건조)	1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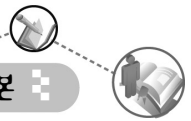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71233000	기타(건조)	15%	9%
071239010	표고버섯(건조)	15%	12.8%
071290050	감자(건조)	15%	12.8%
071290010	죽순(건조)	15%	9%
071290020	고비(건조)	15%	9%
071290040	무우(건조)	15%	9%
071290060	박고지(건조)	15%	9%
071290090	기타채소(건조)	15%	9%
071310010	완두(피섬 새티범)(약품처리에 의해 종자용으로만 적합하도록 한 것) (건조)	무세	무세
071310211	완두(종자용)(건조)	10%	6%
071310211	완두(기타)(건조)	417엔/kg	
071310221	완두류(공통의 한도수량)(건조)		10%
071310229	완두류 기타(건조)	417엔/kg	354엔/kg
071320010	추두(약품처리에 의해 종자용으로만 적합하도록 한 것)	무세	무세
071320020	추두(약품처리에 의해 종자용으로만 적합하도록 한 것을 제외)	10%	8.5%
071331000	녹두	무세	무세
071332010	팥(공통한도수량 이내것)	417엔/kg	10%
071332090	팥(기타)	417엔/kg	354엔/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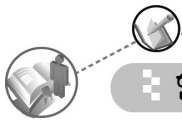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71333010	강남콩(약품처리에 의해 종자용으로만 적합하도록 한 것)	무세	무세
071333210	강남콩(종자용)	10%	6%
071333221	강남콩(공통의 한도수량 이내의 것)	417엔/kg	10%
071333229	강남콩(약품처리에 의해 종자용으로만 적합하도록 한 것, 종자 용을 제외)	417엔/kg	354엔/kg
080211100	비터 아몬드(탈각하지 않은 것)	무세	무세
080211200	스위트 아몬드(탈각하지 않은 것)	4%	2.4%
080212100	비터 아몬드(탈각한 것)	무세	무세
080212200	스위트 아몬드(탈각하지 않은 것)	4%	2.4%
080231000	호두(탈각하지 않은 것)	10%	10%
080231000	호두(탈각한 것)	10%	10%
080240000	팥	16%	9.6%
080300100	신선 바나나(매년 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40%	20%
080300100	신선 바나나(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50%	25%
080300200	건조 바나나	6%	3%
080410000	대추야자	무세	무세
080420010	신선 무화과	10%	6%
080420020	건조 무화과	10%	6%
080430010	신선 파인애플	2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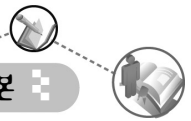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80430090	건조 파인애플	12%	7.2%
080440010	신선 애버카도우	6%	3%
080440090	건조 애버카도우	6%	3%
080450011	신선 망고	6%	3%
080510000	오렌지(매년 6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20%	16%
	오렌지(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40%	32%
080520000	맨더린, 온주밀감, 클레멘타인, 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	20%	17%
080540000	그레이프푸루츠(자몽)(매년 6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10%	10%
	그레이프푸루츠(자몽)(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10%	10%
080550010	레몬	무세	무세
080550090 080590020	라임	무세	무세
080590090	기타 신선유자(감귤류과실/기타에 해당)	20%	17%
080610000	신선 포도(매년 3월 1일부터 동년10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20%	17%
	신선 포도(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수입된 것)	13%	7.8%
080620000	건조 포도	2%	1.2%
080711000	수박	10%	6%
080719000	멜론	10%	6%
080720000	파파야	4%	2%
080810000	사과	2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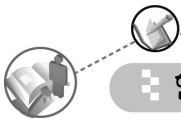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80820000	배 및 마르멜로	8%	4.8%
080910000	살구	10%	6%
080920000	버찌	10%	8.5%
080930000	복숭아	10%	6%
080940000	자두 및 슬로우	10%	6%
081010000	딸기(신선)	10%	6%
08102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10%	6%
081040000	크랜베리,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종의 과일	10%	6%
081050000	키위	8%	6.4%
081090299	단감(신선)	10%	6%
081110100	냉동딸기(설탕첨가)	16%	9.6%
081110200	냉동딸기(기타)	20%	12%
081290490	일시적 보존처리 딸기	20%	12%
081290100	일시적 보존처리 바나나(매년 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40%	20%
081290100	일시적 보존처리 바나나(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50%	25%
081290200	일시적 보존처리 오렌지(매년 6월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20%	16%
081290200	일시적 보존처리 오렌지(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4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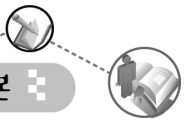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081290430	일시적 보존처리 밥	16%	9.6%
081310000	건조 살구	15%	9%
081320000	건조 프룬	4%	2.4%
081320000	건조 사과	15%	9%
081340022	곶감	15%	9%
0814000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의 껍질(일시적 보존처리)	2.5%	1.5%
090210000	녹차	20%	17%
090240220	유자차(기타 차류)	20%	17%
090420100	고추(건조,분쇄) 소매용용기들이	7%	6%
090420210 090420220	고추(건조,분쇄) 기타	무세	무세
100610010	벼 (정부수입)	402엔/kg	무세
100610090	벼 (기타의것)	402엔/kg	341엔/kg
100620010	현미 (정부수입)	402엔/kg	무세
100620090	현미 (기타의것)	402엔/kg	341엔/kg
100630010	정미 (정부수입)	402엔/kg	무세
100630090	정미 (기타의것)	402엔/kg	341엔/kg
100640010	쇄미 (정부수입)	402엔/kg	무세
100640090	쇄미 (기타의것)	402엔/kg	341엔/kg
100810010	메밀	15%	9%
120991010 120991090	채소종자	무세	무세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121120000	인삼 (원료삼)	5%	4.3%
121220110	건조김(장방형태로 1매가430cm ² 이하)	1.5엔/1매	
130219110	인삼엑기스(식물성1종류의 원료에서 얻은 음료의 기초로서 사용하는 액즙 및 엑기스)	10%	10%
160232290	삼계탕	8%	6%
190490110	쌀가공품 쌀함유량이 전중량의 30% 이하의 것	402엔/kg	25%
200599911	마늘가루(기밀용기들이로 용기와 더불어 1개의 중량이 10kg 이하의 것)	16%	9.6%
200599919	김치, 조제한 기타야채(기밀용기들이로 용기와 더불어 1개의 중량이 10kg 이하의 것)	12.8%	12%
200599991	마늘가루(기타의 것)	11.2%	10.5%
200599999	김치, 조제한 기타야채(기타의 것)	9.6%	9%
200791119	유자차(감귤류과실/기타의 것/설탕첨가)	28%	16.8%
200819193	밤통조림(기밀용기들이로 1개 중량이 10kg이하의 것)	28%	16.8%
210111210 210112121	인스턴트 커피	12.3%	8.8%
210310000	간장	9.6%	7.2%
210390130	된장	9.6%	7.2%
210390229	고추장	14%	10.5%
210690251	인삼차(인삼 또는 그 엑기스를 함유하는 음료의 기초/설탕을 첨가한 것/ 각 성분중 설탕의 중량이 최대의 것)	28%	28%
210690259	인삼차(인삼 또는 그 엑기스를 함유하는 음료의 기초/설탕을 첨가한 것/ 기타의 것)	28%	23.8%



상품분류 번호	품 목	관 세 율	
		기본세율	협정세율
210690292	인삼차(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기초/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인삼 또는 그 엑기스를 포함하는 것)	12%	12%
210690298	조리김	25%	
220110000	광수 및 탄산수	3.2%	3%
220290100	인삼드링크(알콜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설탕을 첨가한 것)	22.4%	13.4%
220290200	인삼드링크 (알콜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	16%	9.6%
220300000	맥주	6.40엔/ l	무세
220600100	알콜분 1%미만 발효주(사과주, 배주)	35% 또는 27엔/kg중에서 높은세율	29.8% 또는 23엔/kg중에서 높은세율
220600210	청주 및 탁주(막걸리)	70.40엔/ l	70.40엔/ l
220600221	과실, 야채주스와 혼합물 발효주	30.80엔/ l	27엔/ l
220870000	리큐루 및 코디아루	141.10엔/ l	126엔/ l
220890129	소주	17.9%	16%
300490023	인삼 (의약품용 소매포장)	무세	무세



Ⅲ.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1. 개요

- 2007년의 일본 농림수산물의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5.8% 증가한 8조 5,574억 엔.
- 농림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14.9% 증가한 5,160억 엔.
- 이결과 농림수산물의 무역수지는 약 8조415억 엔의 수입초과(전년보다 5.3%증가)

■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액

(단위 : 억 엔)

구분		2007년	2006년	대전년증감률(%)
수입	총액	731,359	673,443	8.6
	농림수산물	85,574	80,859	5.8
	농산물	55,304	50,041	10.5
	임산물	13,905	13,749	1.1
	수산물	16,365	17,068	-4.1
수출	총액	839,314	752,462	11.5
	농림수산물	5,160	4,490	14.9
	농산물	2,678	2,359	13.5
	임산물	104	90	15.6
	수산물	2,378	2,040	16.5
무역수지	총액	107,955	79,019	36.6
	농림수산물	-80,415	-76,37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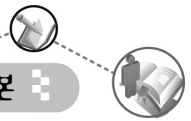
2. 수입동향

- (1) 품목별로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대두, 칩, 연어·송어 등으로 대두는 미국산, 칩은 호주산, 연어·송어는 칠레산이 증가하였음.
-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신선야채, 합판, 새우 등으로 신선야채는 중국산이 감소하였음.



■ 주요 농림수산물의 수입수량 · 금액

품목명	수량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농산물	—	—	55,304억 엔	10.5%
옥수수	16,628천 톤	-1.5	4,517	50.2
돼지고기	760	4.9	4,036	5.2
담배	164	4.3	3,889	-2.5
소고기	475	2.9	2,413	6.6
신선 · 건조과일	1,772	-4.1	2,405	3.1
알콜음료	416천 kl	-0.7	2,326	4.6
천연고무	856천 톤	-4.0	2,117	-0.8
대두	4,161	2.9	1,955	31.1
소맥	5,275	-1.2	1,922	29.0
닭고기조제품	345	-0.2	1,374	3.7
냉동야채	824	-1.3	1,265	2.5
임산물	—	—	13,905	1.1
제재가공재	—	—	13,905	1.1
칩	7.645천 m ³	-13.3	3,456	-2.0
합판	14,337천 톤	4.1	2,879	17.3
통나무	396,909천 m ³	-28.3	2,114	-12.7
수산물	8,973천 m ³	-15.2	2,070	-3.0
새우	—	—	16,365	-4.1
(활, 신선, 냉장, 냉동)	215천 톤	-9.8	2,259	-8.9
다랑어류	—	—	—	—
(신선, 냉장, 냉동)	268	-17.5	2,174	-5.7
송어 · 연어	—	—	—	—
(신선, 냉장, 냉동)	238	17.7	1,421	32.8



(2) 국가별로는 농림수산물, 농산물에서 미국이 1위였고 임산물에서는 말레이시아, 임산물에서는 중국이 제1위를 보였음.

■ 농림수산물의 주요수입국·지역

단위 : 억 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농림수산물	미국 19,653(23.0)	중국 12,068(14.1)	호주 6,522(7.6)	캐나다 5,238(6.1)	태국 4,379(5.1)
농산물	미국 17,205(31.1)	중국 6,945(12.6)	호주 4,802(8.7)	캐나다 3,387(6.1)	태국 3,103(5.6)
임산물	말레이시아 19,653(23.0)	중국 1,787(12.9)	캐나다 1,358(9.8)	인도네시아 1,194(8.6)	호주 1,175(8.5)
수산물	중국 19,653(23.0)	미국 1,412(8.6)	러시아 1,199(7.3)	칠레 1,183(7.2)	태국 1,160(7.1)

■ 주요 수입품목과 금액

단위 : 억 엔

1 미국	옥수수 4,218	담배 2,633	대두 1,524	돈육 1,439	소맥 1,118
2 중국	계육조제품 798	냉동야채 617	뱀장어조제품 476	신선야채 305	집성재 295
3 호주	쇠고기 1,964	칩 1,152	네츄럴치즈 351	소맥 343	설탕 231
4 캐나다	채종(채유용) 1,035	제재가공재 965	돼지고기 873	소맥 452	통나무 244
5 태국	천연고무 1,065	계육조제품 569	새우조제품 258	페트푸드 248	새우 224
6 인도네시아	천연고무 980	합판 794	새우 418	방어·참치류 155	커피생콩 125
7 말레이시아	합판 1,114	팜유 436	통나무 219	제재가공재 150	집성재 80
8 러시아	통나무 726	계 481	제재가공재 385	연어·송어 147	명란 130
9 칠레	연어·송어 835	칩 412	돼지고기 242	제재가공재 117	어분 96
10 프랑스	알콜음료 1,165	돼지고기 48	페트푸드 45	맥아 39	네츄럴치즈 37



3. 한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현황

(1) 농림수산물 전체

단위 : 백만 엔

2006년 순위	2007년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13	14	163,727	169,191	162,649	152,783	147,006	1.7%	-3.8%

(2) 농산물

단위 : 백만 엔

2006년 순위	2007년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13	15	73,616	75,778	76,130	72,978	73,325	1.3%	0.5%

(3) 수산물

단위 : 백만 엔

2006년 순위	2007년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입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8	8	87,511	90,789	83,372	77,811	71,693	4.4%	-7.9%

(4) 품목별 실적

○ 알콜음료

단위 : 천 kl, 백만 엔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성비
97	143,800	106	14,362	100	13,795	100	14,511	107	15,126	6.5%



○ 계육조제품

단위 : 톤, 백만 엔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성비
338	173	345	166	642	318	576	302	549	284	0.2%

○ 참치류

단위 : 천 톤, 백만 엔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성비
56	25,800	53	27,762	52	25,876	43	26,256	37	26,967	12.4%

